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주택건설사업시행인가 처리(청담삼익아파트)

우리구 학동로609(청담동134-18번지)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신청서에 대하여 관련부서(기관) 협의 및 내용을 검토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처리 및 고시하고자 합니다.

- 가. 사업명 :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나. 사업주체 :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- 다. 사업위치 : 강남구 학동로609(청담동134-18번지)일대
- 라. 지역지구 : 제3종일반주거지역
- 마. 시행면적 : 61,978.0㎡
- 바. 사업규모 : 지하3층 ~ 지상35층, 연면적 255,179.315㎡, 공동주택 9개동 (1230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
- 사. 사업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- 아. 기 타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
- 자. 인가조건 : 착공전 토지분할 완료할 것(관련부서협의 조건참조)
- 차 . 각종공과금
 - 국민주태채권 : 60,410,000원
 - 면허세 : 715,000원

붙임 : 1. 고시문(안) 1부

2. 사업시행인가보고서 1부

3. 사업시행인가결과보고서 1부

4. 사업시행인가서 1부

5. 사업시행인가 조건(관련부서 협의결과) 1부

6. 전문가 검토의견1부.

7. 면허세 및 채권산출근거1부. 끝.

